

【 6 】 양주군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2001. 4. 10

제출자 양주군수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전환됨에 따라 그 과세표준·신고납부 및 납입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행세·담배소비세의 세율조정과 새차·현차의 차등과세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계산방법 등 군세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하고, 적용에 있어서 농업의 범위·수입금액의 범위·필요경비의 계산·신고와 납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3조, 제21조, 제42조 내지 제52조)
- 나. 지방세과세표준 심의를 위해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변경함(안 제9조, 제9조의2)
- 다.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기한으로 규정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을 4월로 하고 수정신고의 경우도 신고납부기한을 30일에서 1월로 변경함(안 제22조)
- 라. 새차·현차 차등과세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계산방법을 규정함(안 제38조)
- 마. 주행세 세율을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변경함(안 제41조의3)
- 바. 판매가격 500원이상의 담배에 부과하는 담배소비세액 460원을 510원으로 변경함(안 제56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군군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업소득세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주군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세무과장과 지적관련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5. 기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양주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 영 제80조·제80조의2·제194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군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세무과장과 지적관련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5. 기타 부동산 또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의 직무·직무대행, 위원의 임기, 간사, 위원의 수당, 심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제2항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농지세할"을 "농업소득세할"로, "농지세액"을 "농업소득세액"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120일"을 "4월"로 하고, "30일"을 "1월"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text{자동차 1대의 각 기본세액} = A/2 - (A/2 \times 5/100)(N - 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 (2 \leq N \leq 12)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납기와 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 1 ~ 6. 30	6. 16 ~ 6. 30
제2기분	7. 1 ~ 12. 31	12. 16 ~ 12. 31

제3절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의2 주행세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3(세율) ① 주행세의 비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4절과 제4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농업소득세

제42조(납세의무자)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에 농업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2인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중 “법 제200조”를 “법 제201조”로 하고,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며, “농지의”를 “작물재배지의”로 하고, “농지소득금액”을 “농업소득금액”으로 한다.

제44조중 “법 제201조”를 “법 제202조”로 하고,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며, “농지의”를 “작물재배지의”로 한다.

제45조 및 제4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6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위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범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 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 공제한다. 다만,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47조 및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3
4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12만원 + 4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72만원 + 1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672만원 + 4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초과	1천872만원+ 8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40

제48조(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작물 재배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0조 내지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1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2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군각종위원회실 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제1호가목중 "460원"을 "510원"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6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중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을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부칙(2000. 5. 15 조례 제1740호)제2항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으로 하고, 제1호중 "2000년"을 "2001년"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목) ①(생 략)</p> <p>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4. (생 략)</p> <p><u>5. 농지세</u></p> <p>6. ~ 8. (생 략)</p> <p>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③(생 략)</p> <p>④위촉직위원회가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⑤~⑥(생 략)</p>	<p>제3조(세목) ①(현행과 같음)</p> <p>②-----</p> <p>1. ~ 4.(현행과 같음)</p> <p><u>5. 농업소득세</u></p> <p>6. ~ 8.(현행과 같음)</p> <p>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③(현행과 같음)</p> <p>④위촉직위원회가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군각종위원회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⑤~⑥(현행과 같음)</p>
<p>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②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양주군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세무과장과 지적관련과장은 당연직위원회가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p> <p>2. 판사 · 검사 ·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p> <p>3.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감정평가사 ·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p>

현 행	개 정 안
<p>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포함하여 20인이상 3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p>	<p>5. 기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p>
<p>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양주군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양주군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⑥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군각종위원회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9조의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p> <p>① 영 제80조·제80조의2·제194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군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세무과장과 지적관련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직</p>

현 행	개 정 안
	<p><u>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5. 기타 부동산 또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p>③ 위원장의 직무·직무대행, 위원의 임기, 간사, 위원의 수당, 심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제19조(납세의무자) ①(생 략)	제19조(납세의무자) ①(현행과 같음)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②----- ----- 농업소득세 ----- -----
제21조(세율) ①(생 략)	제21조(세율) ①(현행과 같음)
②소득세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1.~2.(생 략)	1.~2.(현행과 같음)
3.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10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
제22조(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인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0일(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22조(신고납부) ①----- ----- ----- 4월 ----- ----- ----- ----- ----- -----

현 행	개 정 안						
<p><u>제3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 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 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 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 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1기분 세 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 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u> <u>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u></p>	<p><u>제3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 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 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 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u></p>						
<p>기 분 기 간 납 기</p> <table> <tr> <td>제1기분</td> <td>1.1~6.30</td> <td>6.16~6.30</td> </tr> <tr> <td>제2기분</td> <td>7.1~12.31</td> <td>12.16~12.31</td> </tr> </table> <p>②~④(생 략)</p>	제1기분	1.1~6.30	6.16~6.30	제2기분	7.1~12.31	12.16~12.31	<p>(납기표 현행과 같음)</p> <p>②~④(현행과 같음)</p>
제1기분	1.1~6.30	6.16~6.30					
제2기분	7.1~12.31	12.16~12.31					
<p>제3절의2</p> <p><u>제41조의3(세율) 주행세의 비율은 과세물 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u></p>	<p>제3절의2 주행세</p> <p><u>제41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비율은 과세 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로 한다.</u></p>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u>제4절 농지세</u></p> <p><u>제42조(남세의무자)</u> ①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이 절에서 "농 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세 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 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의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 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 의무를 진다.</p> <p>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 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은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 지세의 납부의무를 진다.</p> <p>④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 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 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남세 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남세 의무자가 당해 농지소득세를 납부하여 야 한다.</p> <p><u>제43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별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 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 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p>	<p><u>제4절 농업소득세</u></p> <p><u>제42조(남세의무자)</u>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 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 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의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 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 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 이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 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 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 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 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 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남세 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남세 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야 한다.</p> <p><u>제43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별 제201조-----농업소득세----- -----작물재배지의----- -----농업소득금액----- -----</u></p>

현 행	개 정 안
제44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u>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u>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 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 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 는 허가년월일 사실상준공년월일, 영농 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u>법 제202조</u> <u>농업소득세</u> 작물 재배지의
제45조(과세기간) ①농지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지소득에 대 하여 부과한다. ②남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 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 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③남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 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출 국일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 를 부과한다.	제45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 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남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 한다. ③남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 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연도의 12 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 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 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 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6조(과세표준) ①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 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6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 준은 남세의무자가 제45조의 규정에 의 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 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 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 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p>②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p>	<p>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 공제한다. 다만,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p>
<p>제47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 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p> <p>표(생략)</p>	<p>제47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액은 다음과 같다.</p> <p>표(현행과 같음)</p>
<p>제48조(농지의 변동신고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면적·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8조(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작물재배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2.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때 3. 농지가 농지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 지가 과세지로 된 때</p> <p>②농지세의 남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 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 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 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 실을 즉시 농지세 남세의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p>	<p>②농업소득세의 남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 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장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 득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事實을 즉시 농업소득세 남세의무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9조(중간예납) ①영 제162조의 규정에 서 "연 2회 군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p> <p>②농지세의 남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 정한 날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 로 군수가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하여야 한다.</p> <p>1. 제1기분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p>	<p>〈 삭 계 〉</p>
<p>제50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 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 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고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정 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50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 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 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 로 하여 영 제15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51조(확정신고와 자진납부) ①농지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지소득</p>	<p>제51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 부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p>

현 행	개 정 안
<p>금액을 확정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3조제1항의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농지세의 납부의무자는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 세액 2.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 3. 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 세액 	<p>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제52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 등)</p> <p>①농지수입금액·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p> <p>②농지조사위원회는 국내의 농지소유자·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p> <p>③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농지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52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p> <p>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p> <p>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p> <p>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농업소득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양주군군세조례 개정

개정구분 : 부분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전환됨에 따라 그 과세표준·신고납부 및 납입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행세·담배소비세의 세율조정과 새차·현차의 차등과세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계산방법 등 군세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하고, 적용에 있어서 농업의 범위·수입금액의 범위·필요경비의 계산·신고와 납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3조, 제21조, 제42조 내지 제52조)
- 나. 지방세과세표준 심의를 위해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변경함(안 제9조, 제9조의2)
- 다.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기한으로 규정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을 4월로 하고 수정신고의 경우도 신고납부기한을 30일에서 1월로 변경함(안 제22조)
- 라. 새차·현차 차등과세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계산방법을 규정함(안 제38조)
- 마. 주행세 세율을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상향 조정함(안 제41조의3)
- 바. 판매가격 500원이상의 담배에 부과하는 담배소비세액을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 함(안 제56조)

개정규칙안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세법 제196조의17, 제201조, 제202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1조의2, 제152조 내지 제157조, 제194조의14, 제194조의16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2000. 12. 4부터 12월23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군민의견 없었음